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4

발의연월일: 2020. 7. 20.

발 의 자:김영진·김수흥·한병도

인재근 • 이원욱 • 최종윤

김유덕 • 유동수 • 백혜련

김철민·강득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 러가 있을 때 정부는 사업자 등에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물품에 대한 사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게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국내 생산 및 수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몰수·추징) 제25조제1항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9조의2(몰수·추징) 제25조제1
	항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
	수한다. 다만, 해당 물건을 몰
	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
	<u>을 추징한다.</u>